

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3-4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사유

『하수도법』 개정(법률제8014호, 2006.09.27)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 제20289호, 2007.09.27)되었으며

『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』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이 상위법인 『하수도법』 과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등에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, 특별히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를 폐지함

3. 폐지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4. 폐지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3. 04. 18 ~ 2013. 05. 08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3. 05. 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범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범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